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19. 4.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I. 추진 배경

【대통령 지시사항】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장 퇴진·경영진 문책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 (수석 보좌관 회의, '19.1.14)

1 추진배경

- 최근 공공분야 재난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요구
- 이에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이 정착되도록 경영평가, 임원의 책임, 실태점검, 공시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인력·투자 지원 필요
 - ※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발표('18.12.18), 보도자료 배포('19.1.2)

2 추진현황

- **[안전투자]** 안전시설 투자목적 사업 대상 공사채* 발행 허용('17.3.29.기준개정)
 - 안전관련 투자금액에 대해 경영평가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19년)
 - * 안전분야 지방공사채 승인현황 : (서울교통공사) 4,450억원, (부산교통공사) 694억원
-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 확대*(2~3점→최대 10점,'18년)
 - * 현행 경평지표(5~10점) : [공통(5점)] 재난(시설)·안전관리, [사업별(2~5점)]
 - ①(도철)안전사고 5점, ②(시설공단)사고발생건수 4점, ③(환경공단)산재율 4점 등
 - **(원청 책임)**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하청업체 재해율 통합 관리
 - ※ (현행) 외주업체 안전관리 예방조치(정성) → (개선) 외주업체 재해율(정량) 추가
 - **(전문가 참여)** 경영평가단 구성 시 안전·환경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 ※ '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186명 중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20명(11%) 참여
-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1.2~4.19)
 - ※ 시설 노후화 현황·사고이력 유무, 안전점검 실시 등 (점검결과 별도 보고)

Ⅱ. 주요 내용

1 지방공공기관 안전 경영 체계 확립

□ 안전 중심 경영체계 구축

- (안전기본계획)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립(19년은 6월말까지 수립)
 - *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금년도 활동계획, 안전조직 구성 및 안전시설·예산 등
 - ※ 차년도 경영평가지 이행상황 반영 예정
-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조직과 그 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규정을 수립·운영
- (안전인력 확충)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 *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

□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자체점검 강화) 기관별 작업장·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 및 개선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 현장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사항(개인보호구 착용,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퇴거 조치
- (위험성 평가) 건설물·설비 등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발주시 계약 조건에 위험성 평가 점검을 포함하여 통합 관리
 - *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위험성 결정 → 자발적 예방조치
 - ※ 최근 3년간 사망자 발생 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검토 후 자치단체장 제출

□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 (작업근로자 보호) 위험작업장 단독작업 제한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
 -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 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 단독 작업 제한
 -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 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 (현장밀착형 안전 강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 (現) 발전 5사 적용 → (개선)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 (안전교육) 경영진, 안전담당자, 현장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진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업무 변경 및 위험 작업 담당 시 관련 실무현장교육 추가 실시
- (안전기술 개발)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및 이용 확대
- (안전 홍보) 매월 「안전점검의 날(4일)」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례화

2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운영

-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요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을 중점기관*으로 지정·운영('19년 기준 지방공기업 74개, 출자·출연기관 13개)

<안전관리 중점기관 >

- ▶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 ▶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기관

□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 (조직강화)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운영, 임원급 안전 책임자 지정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안전관련 자문기구로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신설·운영
 - ※ 필요시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권고
- (안전경영 인증)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추진
 - * '계획수립-실행-점검-개선' 과정을 통해 지속적 안전보건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
 -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지 가점 부여

Ⅲ.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 계획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19.4월)
 - 전 기관 공통과제/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등
- 2020년 경영평가 편람 확정·통보('19.4월)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및 조치사항 반영
 - 중대 안전사고 발생시 평가등급 하향 조정*
 -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18.12월 국회제출)에 법적 근거 신설, 현행 편람 반영
 - 재난·안전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대국민 공개
 - *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를 통해 매년 말 공개(지방공기업법 §46 등)

□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19.5.9한)
 -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90(2019. 1. 8.)호 및 공기업정책과-625(2019. 3. 8.)호와 관련
 - 산하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19.12월)
 - ※ 별도 양식 송부
- (지방공공기관) 기관별 안전기본계획 수립('19.6월)
 - ※ 20년도부터는 매년 1월말까지 수립,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

참고 1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1. 안전 중심 경영 체계 구축	
① 공통 추진 과제	
▪ 사망자 발생기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해당 기관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안전기본계획 수립	전 기관
▪ 안전관련 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안전에 관한 내부 규정 수립·운영	전 기관
▪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 기관
▪ 작업장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보수 등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 기관
▪ 사망자수, 재해율 등 안전 분야 공시 항목 신설	전 기관
▪ 공공기관 임원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 의무	전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 과제	
▪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운영	중점 기관
▪ 임원급의 안전 책임자 지정	중점 기관
▪ 안전경영관련 심의기구로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중점 기관
▪ 사업장 안전 관한 협의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중점 기관
▪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추진	중점 기관
2.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기관별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전 기관
▪ 현장 근로자 사전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	전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후 자발적 예방조치 시행*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기관은 안전전문기관 검토 후 자치단체장 제출	전 기관
▪ 도급·발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점검하여 부실 시 보완 조치 요구	전 기관
▪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정밀안전점검 포함)	전 기관
▪ 안전사고 발생 원인 파악 및 사고기록 보존 의무	전 기관
3.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	
▪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신입 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 단독 작업 제한	전 기관
▪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전 기관
▪ 산재 위험 노출 근로자 대상 심리치료 운영 등 안전보건 관리 실시	전 기관
▪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전 기관
▪ 공공기관 직원 및 현장 근로자가 안전관련 개선과제 제시하는 '내부 제안제도' 실시	전 기관
4. 안전교육 및 기술개발 촉진	
▪ 경영진, 안전담당자, 현장관리자 및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교육 실시	전 기관
▪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및 이용 확대	전 기관

참고 2

안전관리 중점기관 대상 지방공공기관 (2019년 기준)

<안전관리 중점기관 >

- ▶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 ▶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 유형별 안전관리 중점기관 대상

유형	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계(중복제외)	83개	70개	13개
과거 3년간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기타 지자체장이 지정 요청하는 기관	4개	<4개> 서울교통공사, 대구환경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안산시 하수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7개	<6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1개> 서울의료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69개	<69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산구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부산지방공판스포츠원,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상수도,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상수도, 울산시설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시상수도, 안산도시공사, 안양시상수도, 안양시설관리공단, 남양주시상수도,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파주시상수도, 광주광역시상수도, 김포시상수도, 인천시상수도, 구리농수산물공사, 하남시상수도, 원주시상수도, 충청주시상수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익산시상수도, 전남개발공사, 여주시상수도, 광안시상수도, 포항시상수도, 안동시상수도, 구미시상수도, 문경시상수도, 의성군상수도, 창원시상수도, 창원시상수도, 창원시상수도, 진주시상수도, 양산시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충청남도상수도, 하동군상수도, 횡성군상수도	<13개>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주)벅스코, 영화의전당, (주)엑스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주)킨텍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지자체별 안전관리 중점기관 대상

구분	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합계	83개	70개	13개
서울	9개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디자인재단
부산	5개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윈	(주)벅스코, 영화의전당
대구	4개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주)엑스코
인천	9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광주	6개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상수도,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
대전	2개	대전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
울산	2개	울산광역시상수도, 울산시설공단	-
경기	22개	고양시상수도,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시도시공사, 용인시상수도 용인도시공사, 안산시상수도, 안산시도시공사, 안양시상수도, 안양시설관리공단, 남양주시상수도,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파주시상수도, 광주시상수도, 김포시상수도, 이천시상수도, 구리농수산물공사, 하남시상수도	(주)킨텍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고양문화재단
강원	2개	원주시상수도, 횡성군상수도	-
충북	4개	청주시상수도, 충주시상수도 진천군상수도, 증평군상수도	-
충남	1개	충청남도개발공사	-
전북	2개	전주시설관리공단, 익산시상수도	-
전남	3개	전남개발공사, 여주시상수도, 광양시상수도	-
경북	5개	포항시상수도, 안동시상수도, 구미시상수도, 문경시상수도, 의성군상수도	-
경남	5개	창원시상수도, 창원경륜공단, 진주시상수도, 양산시상수도, 하동군상수도	-
제주	2개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